

의과대학 공·병결 신청 및 처리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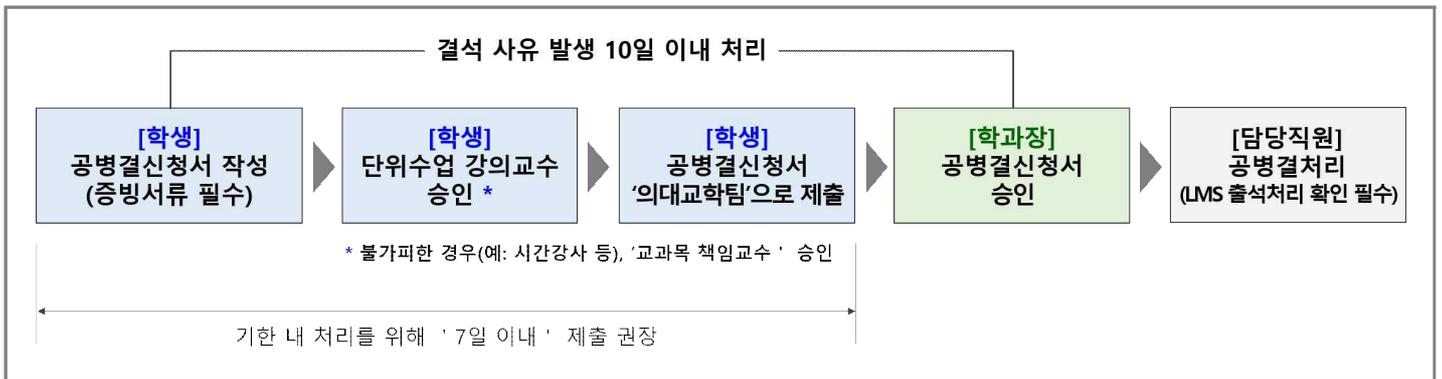
(2023학년도 기준)

■ 공·병결 신청에 따른 출석 인정 기준

건양대학교 홈페이지 「공·병결 신청에 따른 출석 인정 기준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https://www.konyang.ac.kr/kor/sub06_01_10_01.do

■ 신청 및 처리 절차



① 병결로 인한 결석은 수업일수 1/5선을 초과할 수 없음 **

→ 병원진료의 경우, '진단서' 또는 '진료비 세부내역서' 필수 제출

(위 사항이 미기입된 서류 첨부 시, 반려 처리 함)

※ [병결 불인정]

- 진료확인서로 처리 불가
- 미용목적의 시술·수술, 시력 교정 수술 등을 받는 경우(예: 성형, 치아교정, 모발이식 등), 질병의 예방목적 진단/검진/진료를 받는 경우(예: 스케일링, 건강검진 등) 불허

② 여학생 생리공결: 월 1회(1일만 가능), 생리공결 일자가 전월 기준 28일 경과 후 신청 가능

→ 생리공결 당일 기준, 다음날까지 제출 인정(이후 신청시 반려 처리)

[공·병결신청서 작성→ 의대교학팀으로 익일까지 제출(단위수업 강의를 승인 생략)]

③ 시험기간은 공·병결 신청 불가능(신청하더라도 반려 처리함)

④ 처리기한(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) 초과시 공·병결 처리 불가(신청서 반려)

⑤ 학기종료 1주 전까지 제출

** 병결 인정기준: 교과목별 총 시수(학점×16주) 기준 1/5을 초과 불가

학점	총 시수	출석 미달(과목성적 F)
1	16	3시수 초과 불가
2	32	6시수 초과 불가
3	48	9시수 초과 불가
4	64	12시수 초과 불가

학점	총 시수	출석 미달(과목성적 F)
5	80	16시수 초과 불가
6	96	19시수 초과 불가
7	112	22시수 초과 불가
8	128	25시수 초과 불가